

2009. 5.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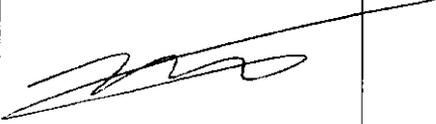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이 정 임 의원 (서명인)

외 수 인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 경민		
강 봉우		
양 순경		
조 덕희	조 덕희	
김 영섭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최영화	최영화	

제천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33
------	------

발의년월일 : 2009. 5. .

발 의 자 : 이정임의원의외 5인

1. 제안이유

○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장기기증운동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장기등 기증 등록및 접수창구 설치근거를 둠(안 제3조)

○ 등록창구 : 보건소

○ 접수창구 : 시청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민원실, 보건소

다.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 (안제4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6조,제7조)

○ 위원회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 위원회 위원은 의사, 종교지도자, 직능단체장, 기업체대표,
장기등 기증등록자등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홍보사항,
위로금 지급등

○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회의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마.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제 10조)

-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50% 감면
-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100만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2.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장기등 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제천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 제천시 직능단체장
4. 관내 기업체대표
5. 장기등 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50% 감면
3. 장기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만원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장기등 기증사망자

②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등 기증사망자

③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신·구조문대비표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의 감면) (생 략)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제6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장기등 기증사망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생 략) 1. ~ 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3. 장기등 기증사망자</u> 4.(현행 제3호와 같음)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생 략)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